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22 | 2024.02.13 (2024.02.05~02.12)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2.05~02.12)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지난주에는 제9차와 제10차 민생토론회를 통해 각각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고자,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키로 하였으며,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시작키로 하였습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며,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 후학교와 돌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전략 발표**하며, 전기요금 특별지원(126만명, 2.21~)·이자환급(228만명, 3.29~) 등 소상공인 비용 지원 신속 집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현행 8천만원 미만 → 1억 4백만원 미만),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제재처분기준 개선, 정부 모태펀드 1.6조원 전액 1분기 내 신속 출자,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로 행복한 사회, 케이(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 일상과 세계 시장에서 한국문화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키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중점 추진할 핵심과제로서 ① 국민 여가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 민생 해결, ② 케이-컬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신(新)문화전략 수립, ③ 세계 시장의 선두주자, 케이-콘텐츠 육성, ④ 방한 2천만 명 달성 프로젝트 추진, ⑤ 일상 스포츠 활성화로 스포츠산업 도약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는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하여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로서 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불공정 피해기업의 원활한 손해배상을 지원, 공정거래 분쟁조정시스템 전면 개편 등) ②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 ③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모바일상품권, 적립금 등의 환불기준, 유효기간을 개선 등), ④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금융감독 목표로서 **“확고한 금융안정(전략①), 따뜻한 민생금융(전략②), 든든한 금융신뢰(전략③), 역동적인 미래성장(전략④)”**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및 12대 핵심과제 ((가계·기업부채 리스크 관리,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민생침해 금융법

죄 근절, 소비자 권익 강화, 서민·취약계층 금융애로 해소, 시장교란행위 엄단, 불법·불건전 영업 근절, 지배구조·내부통제 개선, 디지털금융 성장지원, 금융산업 혁신지원, 금융감독 관행개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주요 입법예고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 분야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그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과 인사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상한, 임용요건, 임용절차, 응시요건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파견의 대상 및 기준, 겸직 허가의 기간과 절차 및 직권 면직 사유를 정하며,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양되는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의 계약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입주기업체가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산업집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개선 및 신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있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에 다극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메가시티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이 없어 이를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갑석의원 등 21인)**」,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대도시의 경우 재개발사업 대상이 되는 토지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조합형식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바, 재개발사업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업시행을 어

럽게 만드는 사유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토지등소유자 요건을 2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등 11인)」 등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2/15(목) 10시 법사위에서는 법무부장관후보자 박성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에 따라 제413회국회(임시회)가 2/19(월)-2/29(목)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 교섭단체대표연설(2/20(화) 민주당, 2/21(수) 국민의힘), 대정부질문(2/22(목) 비경제, 2/23(금) 경제), 상임위 활동(2/24(토)-2/28(수)), 본회의(2/29(목))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9차 민생토론회 :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교육부) 7
- 제10차 민생토론회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전략 발표(정부부처 합동) · 10
-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문화체육관광부) 16
-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고용노동부) 19
-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공정거래위원회) 21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19일)의 차질없는 준비 계획 발표(금융위원회) 25
-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개최(금융감독원) 26
-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발표(금융감독원) 2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30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30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31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31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32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3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환경부) 3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33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34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부) 36
- 산업집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37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38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39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39

3. 법률 발의(제출)안 [바로가기](#)

-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갑석의원 등 21인) 4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4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42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등 11인) 43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2.05~02.12) [바로가기](#)

- [환경]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동향 및 개발사업에의 시사점 검토
- [보험] 사업시행자가 건설공사보험금으로 280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금액의 98% 기각시킨 사례
- [에너지·자원] CCUS법 제정 및 공포
- [기업인수/합병]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동향
- [방송통신(TM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관련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제9차 민생토론회 :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2024-02-05

정부(교육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함

정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고자,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키로 하였으며,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시작키로 함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며,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기로 함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올해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으나, 늘봄학교에서는 신청 우선순위, 추첨, 탈락 등이 없으며, 맞벌이 가정 등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는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모두가 늘봄학교(기존 방과후·돌봄 포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

* (2024년) 초1학년 → (2025년) 초1~2학년 → (2026년) 초1~6학년

②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무료 제공

올해 1학기 2,000개교 이상, 2학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하며, 초등학교 1학년 성장·발달 단계와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임

* 2024년 초1 예비학부모 선호 프로그램 : 체육(44.9%), 문화 예술(39.3%) 등

이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하고, 놀이 중심의 예·체능 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025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여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을 2시간 제공할 계획임

③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늘봄학교 전국 도입과 함께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우선,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하여 늘봄학교 신규 업무가 기존 교사 업무에 더해지는 것을 방지하며,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되어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며, 학교에 늘봄지원실 설치를 완료함

* 공무원, 공무원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으로 지방공무원을 배치하며,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하여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예정임

붙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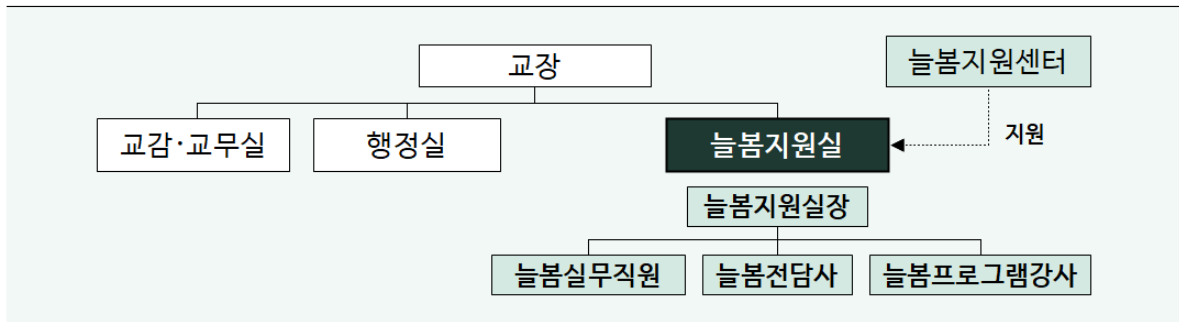
늘봄학교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지금까지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		앞으로 (늘봄학교)
이용 대상	방과후 참여율 50.3% 돌봄 참여율 11.5% * '23년 기준, (초1) 방과후 70.8% 돌봄 34.5% (초2) 방과후 66.1% 돌봄 25.9%	→	희망하는 초등학교생 100% * ('24년) 초1학년 100% ('25년) 초1~2학년 100% ('26년) 초1~6학년 100%
이용 시간	오후 1~5시까지 중심 * 돌봄은 수요에 따라 오후 7시까지	→	정규수업 전 아침,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 (최장 오후8시)
비용	프로그램 비용 학생·학부모 부담 * 단, 저소득층 등은 무료수강권 제공	→	프로그램 비용 무료 * 연중 매일 2시간이내(2개 프로그램) ('24년) 초1 ('25년~) 초1~2
프로그램	학교 인근의 고착화된 공급처 위주	→	전문기관, 대학, 기업 등 우수공급처 확대 * 온라인 프로그램 공급플랫폼, 「늘봄허브」 구축·운영('25년~)
운영 공간	학교 내 돌봄교실(돌봄), 일반학급 등(방과후)	→	학교 안 다양한 공간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교실 등) +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운영 방식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 설치·운영 * 교육(지원)청에 「늘봄지원센터」 구축

붙임2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구축 로드맵

① '25년 최종완성 :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 기반 운영



* 위 도표를 기본모형으로 하되, 시도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② '24~'25년 추진 로드맵

구분	과도기단계		최종완성
	① '24년 1학기	② '24년 2학기	③ '25년
늘봄지원실	설치 추진	1교1실 설치·운영	1교1실 설치·운영
늘봄지원실장	공무원*, 교감 * 늘봄지원센터 소속	공무원*, 교감 * 늘봄지원센터 소속	지방공무원* (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 * 큰 학교에 전임발령
늘봄실무직원	늘봄 신규업무	늘봄 신규업무 +기존 방과후·돌봄 업무	늘봄 신규업무 +기존 방과후·돌봄 업무
교사	기존 방과후·돌봄 업무	늘봄실무직원 등에게 방과후·돌봄 업무 이관	

↑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 해소

↑

늘봄지원실
전담체제 완성

정부부처 합동
(중소벤처기업부)

제10차 민생토론회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전략 발표

2024-02-08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전략 발표하며, 전기요금 특별지원(126만명, 2.21~)·이자환급(228만명, 3.29~) 등 소상공인 비용 지원 신속 집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현행 8천만원 미만 → 1억 4백만원 미만),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제재처분기준 개선, 정부 모태펀드 1.6조원 전액 1분기 내 신속 출자,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 확충 등을 밝힘

【 함께 줄이는 부담 】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 전통시장 활력 회복,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함

(1) 비용부담 경감

①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하여 126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기료 부담을 경감

-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

② 저금리 대환대출(1.5만명)과 은행권·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명) 지원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 경감

-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2월 26일부터 지원
-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3월 29일부터 지원
- ※ 참고 : 은행권 이자환급(최대 300만원)은 2월 5일부터 지원 개시

③ 지역신보 1조원 신규 보증재원 마련, 3.7조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4.2만명에게 안정적 자금 조달 지원

-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을 상향(0.04% → 0.07%)하여 소상공인 3.2만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
-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 3.7조원 규모 정책자금 공급

④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까지 상향

-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8천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 4백만원까지 상향

(2)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회복

- ① **온누리상품권 5조원 발행, 해외 우수시장 투어프로그램,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 전통시장 활력 제고, 역량 강화, 환경 개선 추진**
 - 온누리상품권을 작년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하여 가맹점을 25만개로 대폭 확대
 - 전통시장의 주차장 건립, 노후 시설 개·보수 등 주변 환경 개선
- ②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여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쇠퇴한 상권 회복 도모**
 -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 상권을 발굴하고, 발전 전략을 기획·실행하는 상권기획자와 상권발전기금을 제도적으로 도입
 - 정부가 상권 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등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

(3) 폐업 부담 완화

- ① **소상공인 4만명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영 위기에 대비하는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 강화**
 -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기존 최대 50%)를 정부가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 개편 예정
- ② **노란우산공제 지급과 간이회생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
 - 공제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

*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 부담 영업소득자

【함께 만드는 환경】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걸림돌을 해소하고, 대·중소·소상공인들이 상생 협력하는 기업 환경 조성 추진키로 함

(1) 기업하기 좋은 환경

- ① **선량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을 추진**
 -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

<주요 정비 대상 법률 개선·정비 방향>

구 분	개선·정비 방향
① 창업 등록기준 개선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록기준 개선
② 시설·장비 기준 완화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직접 소유 외에 임차, 공유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
③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	위반 사유·정도에 비추어 바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취소사유 정비
④ 휴업·폐업 부담 경감	세법상 휴업·폐업 신고 외에 개별법상 휴업·폐업 신고의무는 폐지하는 등 사업자의 휴업·폐업 관련부담 경감
⑤ 금전납부 부담 완화	소상공인 대상 부담금, 수수료, 교육비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
⑥ 보수교육 조정	보수교육의 주기·횟수·시간 등의 합리적 조정 및 성실한 보수교육 이행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 등 지원

② 범부처 기술탈취 근절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 피해 회복 지원

-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하여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 5배까지 상향하여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임
-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

* 후속 특허출원 주기적 모니터링 및 모인 의심 특허 선별, 전문가 진단 후 정보제공

(2)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협력

①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정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확립

-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 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
-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

* 제3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주요 원재료 존재 여부 확인, 연동 약정 컨설팅 등 제공

② 대형마트-골목상권 상생협력 강화

-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 신설

【함께 키우는 미래】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하고,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과 대외 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키우기로 함

(1)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①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조성 등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

- 올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 전액 1.6조원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하여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

-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여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조성,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
-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

* 국내·외 우수 벤처캐피탈이 엄선한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 패키지 지원

②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를 본격 조성하고,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화

-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창업지원법’이 올해 8월 중에 시행
- 글로벌기업, 전세계 청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한국형 스테이션-F를 올해부터 설계
-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Open AI 등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

(2) 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

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

-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5만개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별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현장 정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 중에 마련
- EU-CBAM 등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24년 24.1억원)을 신규로 지원

② 도전적 과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

-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 거점을 본격 운영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1 함께 줄이는 부담

경영부담 경감

- 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②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 ③ 소상공인 전용 금융지원 확대
- ④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전통시장 활력회복

- ① 전통시장 역량 강화 및 활력 제고
- ② 지역 상권 육성

폐업 부담 완화

- ① 고용보험료지원 확대 및 절차간소화
- ② 노란우산공제 개편
- ③ 간이회생절차 간소화

2 함께 만드는 환경

좋은 기업환경 조성

- ① 제약 없는 기업환경 조성
- ② 기술탈취 근절 및 보호
- ③ 불공정 피해 회복 지원

상생협력

- ①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정착
- ② 대형마트X골목상권 상생협력

3 함께 키우는 미래

창업·벤처

- ① 민간 중심 벤처자금 공급
- ②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

중소기업

- ①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DX)
- ②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지원
- ③ 도전적 R&D 집중 지원

< 과제별 추진일정 >

주요 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1. 함께 줄이는 경영부담		
(1) 경영부담 경감		
▶ 소상공인 전기료 특별지원	신청 접수	'24.2.21~
▶ 고금리 대한대출	접수 및 지원	'24.2.26~
▶ 은행권·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은행권 및 중소기업권 이자환급 개시	(은행권)'24.2.5~ (중소금융권)'24.3.29~ ※ 집행개시일 기준
▶ 금융기관의 지역신보 출연요율 상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	'24.2월
▶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24.2월
(2)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회복		
▶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가맹점 확대	5조원 발행 완료/전통시장법시행령 개정	'24.1월~
▶ 해외 우수전통시장 마케팅 프로그램	해외 탐방추진 계획 수립	'24.3월
▶ 노후점포 시설개선 및 화재안전 지원	매대, 간판 개선, 화재안전지침 개정 등	'24.4월~
▶ 지역 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지역상권법 개정	'24.하
(3) 사회안전망 확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공고 및 수시 접수	'24.1월~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절차 간소화	고시 등 개정, 신청·접수 시스템 개선	'24.6월
▶ 노란우산공제 개편(중간정산, 과세 등)	협동조합법시행령/조특법시행령 개정	'24.6월/'24.2월
▶ 간이회생절차 간소화	채무자회생법 개정 추진	'24.상
2. 함께 만드는 기업 환경		
(1)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자영업자 관련 3법 시행령 개정	청소년보호법·식품법·담배법 시행령 개정	'24.상
▶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법령 정비	전수조사 및 일괄 정비 추진	'24~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인도·베트남 SW인력 매칭, E-9 비자 확대	'24.상~
▶ 기술탈취 사전예방 강화	기술보호 집중지원 시범사업 개시	'24.7월~
▶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상향 등	기술보호법 고시 개정	'24.7월
▶ 하도급 부당특약 무효화	하도급법 개정	'24년 3분기~
▶ 불공정 피해기업 손해배상 소송 지원	공정거래법 개정	'24년 3분기~
▶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쟁조정제도 개선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하도급법 개정	'24년 3분기~
(2)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협력		
▶ 원활한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약정체결 지원, 연동지원본부 추가 지정	'24.상
▶ 납품대금 연동제 탈법행위 적발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 실시	'24.하
▶ 대형마트 골목상권 상생협력 강화	동반성장평가 지표 신설 등	~'24.12
3. 함께 키우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1)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 조성	정부 모태펀드 1.6조원 신속 출자	~'24년 1분기
▶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허용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	'24.상~
▶ CVC 출자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	공정거래법 개정	'24.하~
▶ 한인 창업 해외법인 지원	창업지원법 개정	~'24년 1분기
▶ 글로벌TIPS 신설	공고 및 지원 등	'24.상~
▶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조성지 선정 및 건축 설계	~'24.하
▶ 국내·외 선도기업 개방형 혁신 활성화	삼성전자, Open AI 등 협업프로그램 추진	'24~
(2) 창업·벤처기업 육성		
▶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기술공급기업)	기술공급기업 육성 대책수립	'24.하
▶ 중소기업 녹색전환(GX) 생태계 조성	녹색전환 대책 마련	'24.상
▶ 글로벌 R&D 협력거점 운영	MIT 공동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24.상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문화로 행복한 사회, 케이(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 일상과 세계 시장에서 한국문화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키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 추진할 핵심과제를 설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민 여가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 민생 해결

- ▲19세 문화예술패스 3월 말 첫 발급, 근로자휴가지원 최대 15만 명, 숙박할인권 최대 45만 장 지원

② 케이-컬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신(新)문화전략

- ▲대표 작가, 작품 창출 위한 우수작품 레퍼토리화(대표작품화), '창작-유통-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강화, ▲파리올림픽 계기 '2024 파리 코리아 시즌'

③ 세계 시장의 선두주자, 케이-콘텐츠

- ▲'케이-콘텐츠 전략펀드' 신설(6천억 원) 등 역대 최대 1조 7,4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금융, 게임, 영상, 웹툰 등 핵심콘텐츠 집중 육성

게임	▪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콘솔 및 클라우드·인공지능(AI) 활용 게임 집중 지원 ▪ 게이머이용자 보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3월), 게임 사기 수사 전담인력 지정(문체부·경찰청) 및 표준약관 개정(문체부·공정위) 추진 등 ▪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이양('24~), 등급분류 기준 개선 추진
영상	▪ 미개봉 영화 개봉촉진펀드('24년 23편) ▪ 모태펀드 투자 시 홀드백 의무화 추진, 업계 합의 도출 지원 등 ▪ '지식재산(IP) 확보 조건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특화콘텐츠 제작 및 후반작업 지원(437억 원)
웹툰	▪ 웹툰 플랫폼의 글로벌 성공사례 창출 지원 ▪ '만화·웹툰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추진 ▪ 웹툰 유통 관리를 위한 별도 식별체계 도입 추진 ▪ 웹툰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출판법 개정) 추진

④ 방한 2천만 명 달성 프로젝트

- ▲6월 '코리아 뷰티페스티벌', 10월 '(가칭)대한민국공연축제' 등 문화×관광 융합·브랜드화, ▲케이-관광 로드쇼 확대(15→25개 도시)

문화예술×관광	▪ 대형 한류 페스티벌(10월) 등 케이-팝 콘서트 ▪ 지역 우수 문화관광축제 글로벌화 지원(신규, 25억 원) ▪ '웰컴대학로'와 공연예술 연계로 대학로 글로벌 공연축제(10월) ▪ 미술주간과 키아프·프리즈 아트페어 연계 추진(9월)
뷰티의료×관광	▪ 케이-뷰티·패션·의료 융합 대규모 페스티벌 개최(6월)
스포츠×관광	▪ 스포츠 대회 유치 및 이벤트 발굴, 융·복합 프로그램 지원(40억 원) ▪ 선수·동호인, 사계절 훈련·경기 가능한 전지훈련 특화시설 확대
국제회의×관광	▪ 융·복합 국제회의 육성 지원(6개) ▪ 지역 이색 회의명소(52개소) 활용 컨설팅 지원

⑤ 일상 스포츠 활성화로 스포츠산업 도약

- ▲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 ▲제1차 체육인 복지증진계획 수립, ▲스포츠 기업 대상 역대 최대 3,919억 원 규모 금융 지원

비전	문화로 행복한 사회, 케이(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		
목표	문화&민생	문화&경제	문화&미래
	국민문화예술 관람률 '23년 58.6% → '24년 80% 국민여가 만족도 '23년 60.7% → '24년 65%	방한관광객(명) '23년 1,103만 → '24년 2천만 K콘텐츠산업 매출(원) '22년 150조 → '24년 170조, 스포츠산업 매출(원) '22년 78조 → '24년 86조	대한민국 문화 호감도 (국가이미지) '23년 70.1% → '24년 73%

1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국민 문화여가비 부담 완화	① 일반국민 문화여가비 부담 경감 ② 취약계층 여가비 지출 경감 3종 패키지 ③ 창작자 및 영세 업계 지원
2	수출과 내수 선순환으로 역동경제 이끄는 문화산업 육성	①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 -콘텐츠 ② 방한 2천만 달성 프로젝트 ③ 일상 스포츠 활성화로 스포츠산업 도약
3	케이(K)-컬처 시대 선도하는 글로벌 신(新)문화전략	① 새로운 케이(K)-컬처의 원동력, 예술 ② 파리올림픽 계기 케이(K)-컬처 프로젝트 ③ 전략적 문화교류 협력 강화
4	지역소멸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	① 지역 문화 자생력 키우기 ②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 특별 지원 ③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문화
5	청년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	①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선제적 대응 ② 청년 문화 활동 및 참여 기회 확대 ③ 공정과 혁신 기반 구축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

팍팍해진 살림에 더 부담되는 문화여가비 덜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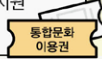
일반국민 문화여가비 부담 경감

- 만 19세 문화예술패스 신설(16만명)
- 근로자휴가지원(15만명), 숙박쿠폰(45만장), 여행가는 달(2회)
-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제공 위한 인증가능시설 확대



취약계층 여가비 지출 경감 3종

- 통합문화이용권 확대(연 13만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유·청소년 월10만원, 장애인 월11만원)
- 관광취약계층 맞춤형 여행 지원



참작자 및 영세 업계 지원

- 예술인 저금리 대출 지원
- 저작권 등록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 관광·스포츠기업 금융지원 확대



콘텐츠, 관광, 스포츠가 역동 경제 구현을 뒷받침합니다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 K-콘텐츠

- 게임, 영상, 만화·웹툰 핵심콘텐츠 집중 육성
- 1조 7,400억 원 규모 정책금융 투입
- 해외비즈니스센터(25개소)로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방한 2천만 달성 프로젝트

- 문화×관광 융합 대규모 축제
- 전 국토 자전거·걷기 여행
-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2024 한국방문의 해' K-관광 로드쇼(25개 도시)



일상 스포츠 활성화로 스포츠산업 도약

- 우리동네 스포츠클럽 환경 조성
- 유아·청년·노년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 체육영재 육성 등 전문체육인 지원 강화



K-컬처 시대, 글로벌 新문화전략의 새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K-컬처의 원동력, 예술

- 공연·미술·공예·문학 등 K-아트 해외 진출 지원
- 우수작품 레퍼토리화, 다년·단계별 지원 강화
- 창작공간, 홍보·마케팅 등 간접지원 확대



패리올림픽 계기 K-컬처 프로젝트

- 브레이킹 댄스 합동공연(5월), 국립예술단체 공연(6~7월)
- 한국미술 대표 작품 전시(7월), 한국공예 쇼케이스(9월)
- 한류종합박람회(9월), 코리아하우스 활용 문화·관광 홍보



전략적 문화교류 협력 강화

- 문화교류 총괄 지원조직 개편
- 캐나다 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추진
- 뉴욕코리아센터 등 재외 한국문화원 거점 확대



문화로 지역소멸, 고립감 등 사회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지역 문화 자생력 키우기

- 대한민국 문화도시, 로컬100
- 지역별 맞춤형 공연·전시, 국립박물관·미술관 전시 순회
-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 특별 지원

- 찾아가는 문화예술·스포츠
-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 관광사업체 융자 우대, 디지털관광 주민중 발급지역 확대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문화

- 정서적 취약계층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외로움·고립감 해소
- 인문활동 통한 회복탄력성 제고
- 종교계 협력 생명존중문화 캠페인



새로운 미래, 청년들과 함께 공정·혁신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선제적 대응

-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제도 개선
- AI 기반 콘텐츠 제작 및 기술개발
- 아트워크리엄 통한 예술×기술 융합



청년 문화 활동 및 참여 기회 확대

- 청년인턴 및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 단위 확대
- 청년 정책 참여기반 확대



공정과 혁신 기반 구축

- 문화예술·콘텐츠 공모사업 책임심의관제 도입
- 장애 예술·체육인 활동 보장
- 문화·체육 관광 공정환경 조성



고용노동부는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그간의 노사법치 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 및 잘못된 관행 개선

-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임
-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①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이거나, ②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강화할 계획임
-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제도, 관행, 의식 변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정기적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 및 우수사례 등을 지속 확산할 계획임

②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하는 문화 정착

-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 실시
-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최우선 집중할 계획임
- 미래세대인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함
- 스포츠클럽,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
- 기업이 주도하는 성과창출형 연구개발(R&D) 시스템으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전격 전환

③ 소규모 기업과 약자보호 강화

-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하여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30인 이상 기업은 그간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하여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

④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

-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

-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입
- 감독이 꼭 필요한 현장에 대해 신속하고 빠짐없이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독 요구(청원)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

붙임	'24년 근로감독 주요 내용
구분	'24년 주요 추진 내용
엄정한 법 집행 결과 확산	❖ 신규 재감독 신설(정기·수시·특별·재감독(신설)) ✓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 신설·확대 ❖ 신규 고의·상습 체불에 대한 무관용 대응 ✓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①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 이상 이거나, ②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특별 근로감독 실시 원칙 ❖ 강화 고의·상습 법 위반 사법처리 강화 ✓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 확립
일하는 문화 개선	❖ 강화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대 분야 집중 기획감독 ✓ ①임금체불, ②차별없는 일터, ③장시간 근로, ④부당노동행위 ❖ 신규 각 지역별 릴레이 기획감독 ✓ 그간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분야인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중심 릴레이 기획감독
소규모 기업 약자 보호	❖ 강화 취약계층 보호 및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 기존 계층별·분야별 정기감독을 종합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하여 모든 계층 및 분야별 노동법 전반 점검 + 매 분기별 건설, 외국인, 청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현장 예방 활동
국민 참여 확대	❖ 신규 익명제고 기반 기획감독 실시 ✓ 체불 등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 대상 익명제보에 기반한 기획감독 + 신고사건과 근로감독 연계 강화(다발 사업장 근로감독) ❖ 신규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 신설 ✓ 감독 실시 사업장 대상 사후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 강화 근로감독 청원 대응 강화 ✓ 타 감독에 앞서, 국민들의 감독 요구에 최우선 대응

올해는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하여, 공정위원회는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주요 핵심과제로는

(1)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 제10차 민생토론회 관련 과제

① 중소·벤처기업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

-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호장치 마련
 - 건설분야에서 특히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하도급법 개정),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등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관행을 중점 점검
 - 건설회사 부실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못 받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등 하도급채권 보호장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수급사업자 대응 매뉴얼을 마련·보급
 -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연동지원본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제도 안착 노력을 전개하고, 탈법행위는 철저히 감시
 - 소프트웨어, 생활가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감시 강화
- 벤처기업·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범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하도급법에 도입
 - 자동차부품, 에너지설비 등 주요 산업기자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막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등을 집중 감시
 -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수익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표준계약서 제·개정 추진

② 소상공인의 사업여건 개선

-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위법행위는 적극 차단
 -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 변경 시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가맹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 필수품목 가격산정방식 등을 구체화(가이드라인 마련 등).
 - 부당이익 수취 우려가 큰 가맹본부(예: 외식업종)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업계에 공유하여 거래관행의 개선을 유도

* (예)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

- 납품업체·대리점에 부담이 되는 불공정 관행 엄단
 -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부당전가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고, 정액과징금 한도를 상향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 대리점의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리뉴얼 前 계약기간을 협의토록 하고(표준계약서 개정), 전속대리점에 대한 영업보호 방안 마련
 - 유통·대리점 연쇄거래구조[유통업자→납품업자(본사)→대리점]에서 심화되는 불공정행위, 편의점, 가구, 타이어 등 민생 밀접업종에서 지속되는 불공정관행을 집중 감시
 - 신용카드 VAN사가 대리점에게, 중고차금융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위험을 전가하는 불공정약관 시정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 강화

- 피해기업의 원활한 손해배상을 지원하고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
 -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공하는 방안 마련 (공정거래법 개정 등)
 - 법원의 소송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유통3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으로 확대
 -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해 지도록 함 (하도급법 개정)
- 분쟁조정 시스템을 개편하여 중기·소상공인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

< 주요 신설·보강 제도 >

- ▲ (간이조정절차 신설) 쟁점이 적은 사건은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하여 신속 처리
- ▲ (감정·자문제도 도입) 조정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자문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
- ▲ (소회의 확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은 조정위원 3인 회의로 조정(5개 분야→공정거래 분야 도입)

(2)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①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

-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들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
 - * ①자사우대, ②끼워팔기, ③멀티호밍 제한, ④최혜대우 요구 등 반칙행위
 - 국내·외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학계·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
- 플랫폼 입점업체의 당면 애로사항*은 민·관 협업을 통해 적극 해소
 - * 높은 수수료율(모바일상품권), 광고비(숙박앱)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분야

- 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면밀히 심사*
- * 중점 점검분야: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광고, 온라인 쇼핑, 숙박업 등

②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거래관행 및 시장구조 개선

-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에 엄정히 대응
- 반도체 유통시장·의료기기 간접납품시장 등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점검
- 생활 밀접분야(예:제빵, 주류, 쓰레기 수거)의 경쟁제한적규제를 개선

③ 미래 혁신을 위한 경쟁활성화 제도 지속 보완

- 신성장 시장의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
 - 정부와 민간의 아이디어를 집약하여 AI 등 「정책보고서」 발간
 - 기후테크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발굴·개선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관련 규제를 완화* (공정거래법 개정)

* CVC 외부출자(40→50%) 및 해외투자(20→30%) 상한 확대

(3)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① 경기위축에 대응하는 현명한 소비기반 마련

-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제품 용량 변경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 소비자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는 것을 부당한 행위로 지정 (고시 개정)
-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 상향 및 적립금 유효기간 연장 추진

②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 신유형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 SNS 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 SNS 숏폼 뒷광고 점검 강화
 - 주요 전문물(인테리어, 신발, 화장품) 다크패턴의 자진 시정 유도
-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책임성을 제고
 - 입점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플랫폼의 관리책임 강화
 - 플랫폼이 법 위반 의심 사업자의 거래를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 (전자상거래법 개정)

③ 소비자 안전기반 구축 및 권익침해 시정

-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
 -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고의 원활한 배상을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고,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
- 일상에 스며든 부당광고(성형, 휴대폰, 안마의자 등)를 밀착 감시
-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의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시정
 - 상조분야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의무를 명시 (할부거래법 개정)
 - 자연휴양림, 캠핑장의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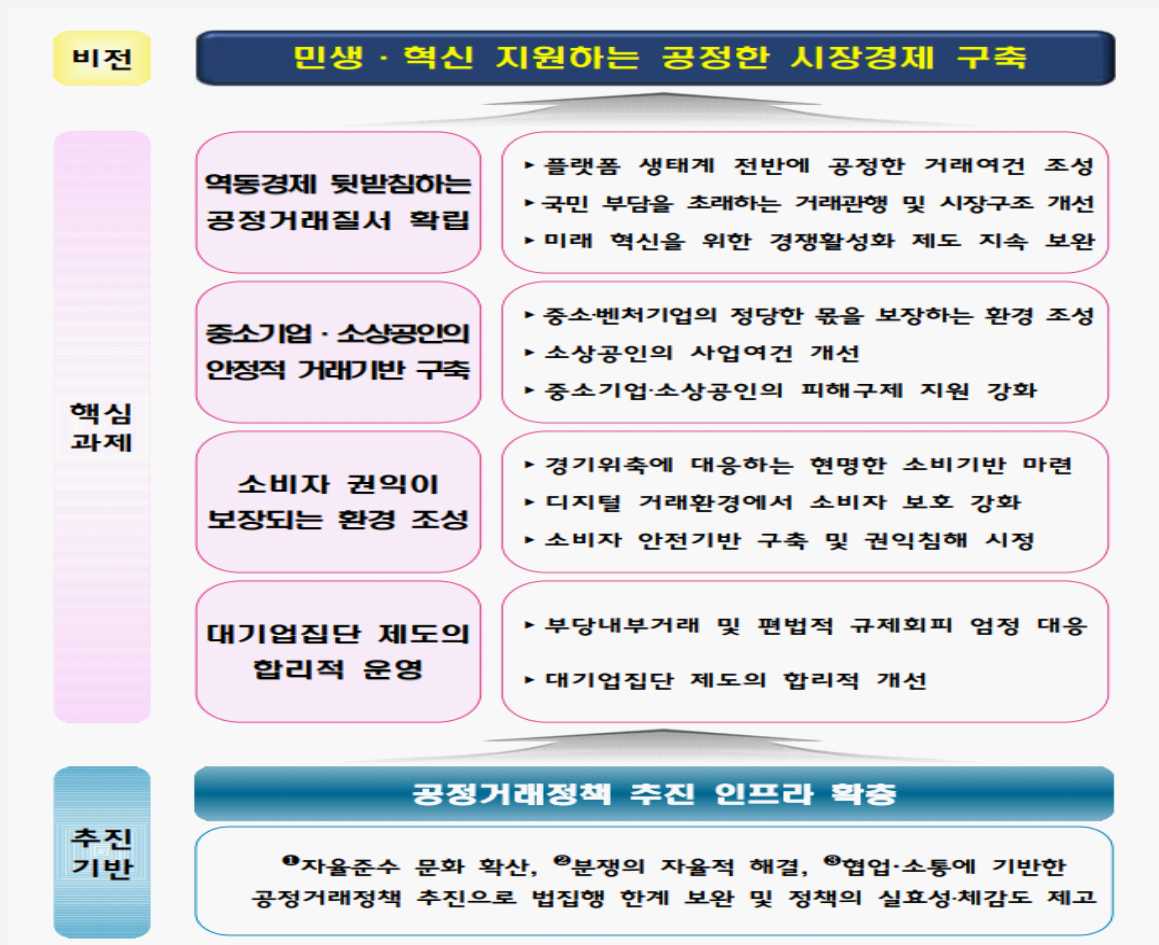
(4)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① 부당내부거래 및 편법적 규제회피 엄정 대응

- 민생 밀접업종(예:식음료, 제약, 의류)의 부당내부거래에 엄정 대응
- TRS(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탈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 규율방안 마련

②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개선

-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집단 범위를 합리적으로 지정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 (공정거래법 개정)
- 금융산업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를 선진화
 -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금융 밀접업종 영위회사(예:핀테크)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함 (공정거래법 개정)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19일)의 차질없는 준비
계획 발표

2024-02-07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3.7.18일 제정되어 7.19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①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②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③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령 및 고시 등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23.12.11일부터 '24.1.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음

* 세종Law Focus 제214호 (2023-12-18) 참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 등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시행령(안)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도 규율함
- ②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는데, 그 비율을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하였음
-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안)이 정하는 기준(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
 - ** (원화마켓 거래소)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 최소 5억원
- ④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
 -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가능
 -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음
 -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
 - 시행령(안)에 따라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과 협의가 되거나, 혐의를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⑤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에 규정됨
 - 시행령(안)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됨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조기에 안착하여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하였으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임

제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어 조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도 1.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과 같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시기(7.19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 등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2월 중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개최

2024-02-07

금융감독원은 20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개최함.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24.7.19.)을 앞두고 처음으로 가지게 된 사업자 CEO 간담회로, 금감원이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법 시행 준비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

한편, 금융감독원은 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차질 없는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을 발표하고 로드맵에 따라 사업자가 '24.4월까지 이용자보호 규제체계의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현장 컨설팅·시범적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규제이행 로드맵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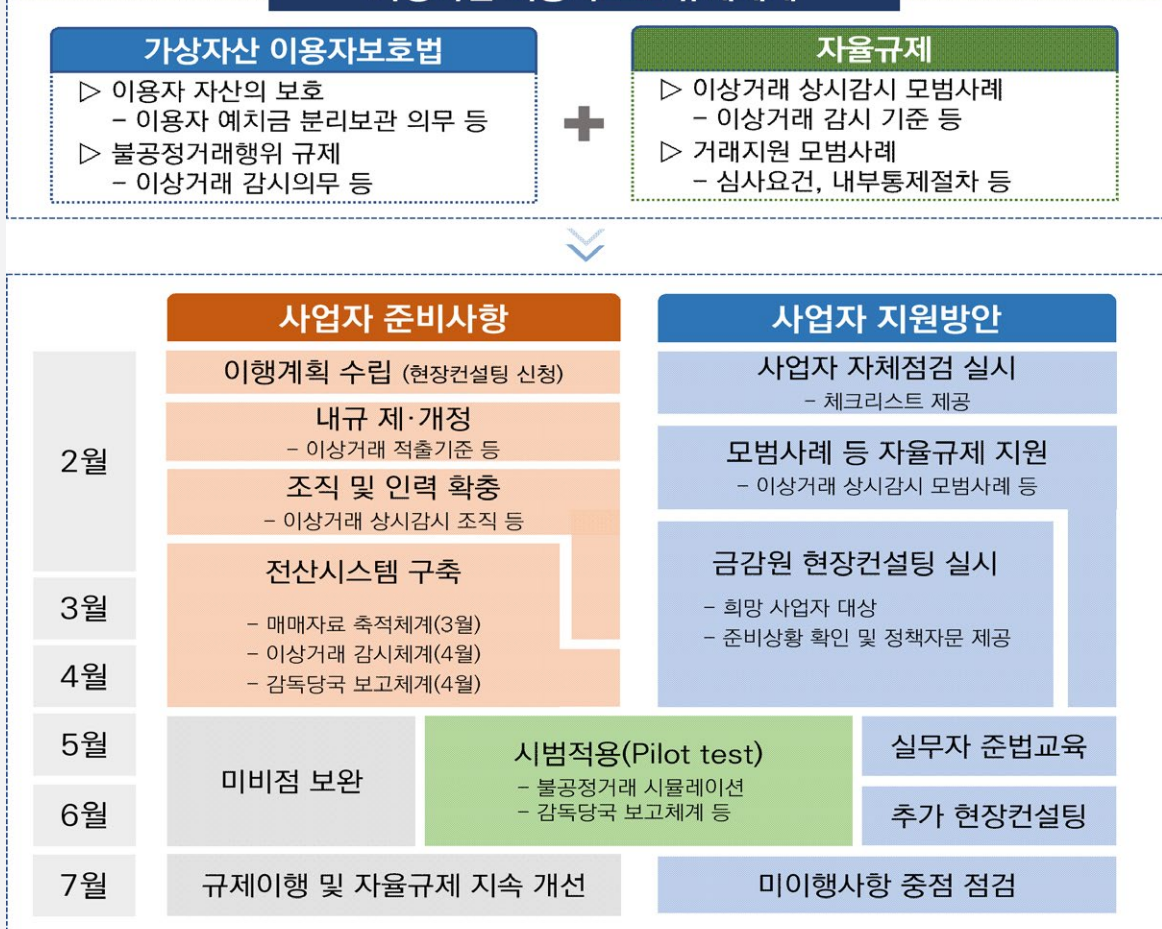
■ 사업자 준비사항

구 분	내 용	이행시기
내 규	■ 법상의무 (이상거래 감시의무 등) 및 자율규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내규 제·개정	2월
조직·인력	■ 이상거래 감시조직 , 거래지원 심의·의결 기구 등 법령 등을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조직 을 구성하고 관련 인력 확충	2~3월
전산시스템	■ 매매자료 축적 및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 감독당국 보고시스템 등의 전산시스템 구축	2~4월

■ 금감원의 사업자 지원방안

구 분	내 용	이행시기
자체점검	■ 사업자는 규제이행 준비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 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계획 수립	2월
현장컨설팅	■ 희망하는 사업자 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을 통한 확인 및 사업자별 맞춤형 정책자문 제공	2~4월
시범적용	■ 이상거래 적출 시뮬레이션 등 규제 시범적용(pilot test)을 통해 사업자별 준비상태를 점검·보완	5~6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규제체계



금융감독원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발표

-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 등 4대 추진전략 및 12대 핵심과제 수립

2024-02-05

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금융감독 목표를 “확고한 금융안정(전략), 따뜻한 민생금융(전략), 든든한 금융신뢰(전략), 역동적인 미래성장(전략)”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및 12대 핵심과제를 수립함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①)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 지원, 부동산 PF·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 등 실시

- **(가계·기업부채 리스크 관리)** 시장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채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
-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PF·해외 대체투자를 비롯한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금융회사의 충분한 자본여력 확보를 유도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건전성 감독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지속 추진

(전략②)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금융관행 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 따뜻한 민생금융의 역할 제고

-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금융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위해 내부 협의체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예방·단속·피해구제 등 쉼단계에서 총력 대응
- **(소비자 권익 강화)**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불공정한 관행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민원 예방 및 유익한 상품·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
- **(서민·취약계층 금융애로 해소)**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 강화 등을 추진

(전략③)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 엄단,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강화,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 **(시장교란행위 엄단)**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및 회계분식 등 시장교란 행위는 엄단하는 한편, 자본시장 규율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
- **(불법·불건전 영업 근절)**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통합형 연계검사를 통해 복합사건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
- **(지배구조·내부통제 개선)**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문화 및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등을 유도하고,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 강화 추진

(전략④) 가상자산법 안착 등 디지털금융 성장 지원, 혁신 지원을 위한 감독제도 정비, 금융감독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역동적인 미래 성장 지원

- **(디지털금융 성장지원)**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 **(금융산업 혁신지원)**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기후리스크에 대응한 녹색 금융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금융감독 관행개선)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및 관행개선 추진, 유연하고 공정한 검사 · 제재 체계 구축 등 감독업무 혁신을 지속

2024 금감원 12대 핵심과제

(전략①) 확고한 금융안정

1 가계·기업부채 리스크관리 강화

- 자기책임원칙 기반 **부실기업 구조조정** 유도
- **가계대출 증가 속도, 건전성** 관리 강화
- **DSR** 적용범위 **점진적 확대**
-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 추진

2 금융시장 불안요인 선제대응

- **부동산PF** 사업장 **정상화, 정리·재구조화** 유도
- **해외부동산 사업장별 DB** 구축
- **컨틴전시 플랜** 종합 개편
- 시장상황 **급변동** 대비 **위험관리** 강화

3 위기에 강한 금융산업 환경 조성

- 은행별 **차등적인 추가자본** 부과
- 보험감독회 **기초가정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 추진
- 저축은행 **자본의 질 제고** 유도
- 증권사 **NCR규제 고도화**

(전략③) 든든한 금융신뢰

7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방지

- 투자자 구분 없는 **공매도 거래조건 균등화** 지원
-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 테마주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 **상장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절차 등 개선

8 불법·불건전영업행위 근절

- **홍콩H지수 ELS** 관련 **불완전판매** 확인시 **엄정 대응** 및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기준** 마련
- **수수료 차별, 거래조건 강요** 등 집중 점검
- 복합사건에 대한 **통합형 연계검사** 실시

9 건전한 지배구조 · 내부통제 구축

- 회사별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반영현황 점검
- **책무구조도** 제도 안착 지원
- 금융사고 **보고·관리체계** 실효성 강화
- 내부통제 **취약요인** 개선

(전략②) 따뜻한 민생금융

4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 설치, 운영
- **불법대부, 보험사기, 리딩방** 등 조사 강화
- **SI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운영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신규 서비스

5 소비자 권익 강화

-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점검, 개선
- 민원 **집중처리, 민원예방** 노력
- 민생안정특약 등 **소비자친화 상품** 개발

6 서민·취약계층 금융애로 해소

- **이사회 보고절차** 등 **사회공헌 지원체계** 점검
- 서금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취약계층** 은행 거래 **접근성 강화**
- **금융앱 고령자(간편) 모드** 금융권 확대

(전략④) 역동적인 미래성장

10 건전한 디지털금융 성장지원

-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이행 준비현황** 점검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인프라** 마련 및 **신속 조사**
- 금융권 **SI활용**에 대한 **규율 개선**
-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 구축

11 금융산업 미래 경쟁력 확보

- 온라인 광고 등 **신유형 광고규제** 개선방안 마련
-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 금융업권별 **감독제도 정비**
 - 부수·겸영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 신용카드업 규제체계 개선 검토 등

12 금융감독 업무관행 혁신

- **업무혁신 로드맵(The F.A.S.T.)** 내재화·고도화
-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 추진
 - 데이터 활용 기반 혁신
 - 시스템 중심 금융감독
 - 금융감독정보 공개 확대
 - 디지털 전환 원동력 확보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02-07 시행예정

법적 의무가 없는 자 중 자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목표관리업체에서 모든 업체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 동향 등을 추가하며, 무상할당비율이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배출권 시장 참여자로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을 규정하는 한편,

시장 참여자의 거래 시 준수의무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요건, 등록취소, 준수의무 등 관리 규정을 신설하며, 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주무관청 등의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7호, 제8조제1항제2호, 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등)

산업통상자원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2025-02-07 시행예정
---------	------------------------------------	-----------------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포집·수송·저장·활용 및 이산화탄소수송관 등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 ② 정부가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③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 ④ 수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며,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⑤ 육상 또는 해상 지중에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의 승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 저장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적화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 ⑦ 이산화탄소 공급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 사업의 실시와 특례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 ⑧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제44조)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24-08-07 시행예정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석유정제업자에게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의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1조, 제2조제3호의2 신설, 제37조의2 신설, 제38조의3, 제45조의2 등)

산업통상자원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24-08-07 시행예정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 및 인증취소 등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로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하며,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제6~8호 삭제, 제6조제4호, 제8조의2제2항제1호, 제11조의2, 제13조 등)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2-17 시행예정

환경유해인자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판매한 경우 그 사실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9668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

이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 보고 이후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한 경우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한 경우에도 그 검사를 받도록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6조의2제2호, 제19조의2 제1항, 제19조의3, 제22조제2항 등)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25-08-07 시행예정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제한·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거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같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제1호, 제2조제7호, 제3조제1항제15호 신설, 제9조제1항제3호, 제3장, 제13조제3호의2 신설 등)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08-07 시행예정
(다만, 제10조 및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성미확인 물질의 정의를 신설하며,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료의 유출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 관련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1조, 제2조제6호, 제5조제6항 신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 제14조제6항제1호 등)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08-07 시행예정
(다만, 일부 규정은
시행일 별도 지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등 기준을 40억원 미만에서 8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며,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면제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중사를 금지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 등을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6조, 제9조제5항, 제11조제1항제3호, 제13조의2 신설, 제27조제1항제1호, 제98조 등)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2-09 시행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경영활동 간섭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15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

이에 따라, 경영활동 간섭 행위의 유형을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분쟁당사자의 성명·주소, 소송사건의 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하는 등 소송중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법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법 상태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및 자진시정·조사협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제11조의2 신설, 제15조제1항, 제23조 등)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2024.02.08. ~03.07.

우주항공 분야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그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과 인사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5. 27. 시행)됨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상한, 임용요건, 임용절차, 응시요건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파견의 대상 및 기준, 겸직 허가의 기간과 절차 및 직권 면직 사유를 정하며,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안 제2조)

- 우주항공청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안 제3조)

- 우주항공청장이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 분야 등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우주항공청장이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을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응시요건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우주항공청 소속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보좌기관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임용할 수 있도록 함

③ 임기제공무원의 파견의 대상 및 기준 (안 제4조)

-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에 대한 행정지원, 관련 기관 간 특수업무의 공동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총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④ 임기제공무원의 겸직 기간 (안 제5조)

- 임기제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정함

⑤ 임기제공무원의 전보에 대한 특례 (안 제6조)

- 우주항공청장은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와 직급이 동일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도록 함

⑥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의 운영 등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함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⑦ 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안 제12조)

- 우주항공청장은 보안 및 재난 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 보안관리 체계, 사업 참여 인력의 보안 등급 부여 방법 및 비밀엄수 준수 조치 등의 사항을 보안 및 재난 대책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안 및 재난 대책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도록 함

⑧ 업무의 위탁 (안 제13조)

-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립을 위한 우주항공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인재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의 추진 등의 업무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전화: 044-202-4692, 팩스: 044-202-4684\)](tel:044-202-469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4.02.06.
~03.18.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조직 설치의무 완화, 기술이전 방식 개편,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제도 개선을 추진함. 또한, 기술거래사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대상 확대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술거래를 촉진하고자 함

나아가, 사업화 지원 대가 수취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사업화 전주기 종합지원사업 등 구체적인 후속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기술은행 등 사업화 지원사업 규정 신설 (안 제9조, 제19조)

- 국가기술은행이 기술거래종합정보망으로 기능하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사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종합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전주기 종합지원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② 기술거래사 제도 미비점 보완 (안 제25조, 제26조)

- 현재 미비한 휴·폐업·재등록 제도와 합동사무소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거래사 제도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③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의무 완화 (안 제31조)

-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 내부에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운영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공공연구기관 내 기술이전·사업화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 조직이 있는 경우, 이를 전담조직으로 간주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내·외부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④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방식 개선 (안 제33조)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시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기술이전 방식을 기술특성, 기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과 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함

⑤ 사업화 지원 대가 수취근거 신설 및 다양화 (안 제35조)

-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 시 기술료 외에도 사업화 지원 대가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기술사업화의 유인을 마련하고자 함

⑥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제도 개선 (안 제36조, 제37조)

-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관련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설립 시 보유기술 제한을 폐지하고,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출자를 허용하며 이 경우 의무지분율을 완화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지분율도 완화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기술사업화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⑦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 확대 (안 제47조)

- 민간역량의 향상을 반영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대상을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영리법인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술신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mailto:saitech@ktr.go.kr) (전화: 044-203-4543, 팩스: 044-203-474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2.07.
~03.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55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

이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양되는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의 계약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입주기업체가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은 해당 공장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함 (안 제2조제2항제4호)
- ② 지원기관의 입주 자격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포함 (안 제6조제1항제1호)
- ③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등의 서비스업도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확대함 (안 제6조제5항)
- ④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및 지정 주체, 산학융합지구 지정 주체를 시·도지사로 함 (안 제28조제3항, 제29조, 제29조의5제4항, 제29조의6 등)
- ⑤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구역에 제조업소 등 일부 소규모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함 (안 제36조의4제2항제1호)
- ⑥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요건을 입주기업체의 70% 이상 또는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 이상으로 완화함 (안 제38조제3호)
- ⑦ 주기적으로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는 산업단지를 규정함 (안 제43조의3 신설)
- ⑧ 입주기업체가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로 함 (안 제49조제1항제2의3호)
- ⑨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과 관련하여 부동산금융의 방법, 계약기간, 계약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안 제57조의2 신설)
- ⑩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주체와 목적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구분하고,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대상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8조의2, 제58조의5, 제58조의6 등)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전화: 044-203-4432, 팩스: 044-203-4739)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2.08.
~03.19.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과 통합발전소사업 등 2개 유형의 전기신사업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사용할 시 전력시장 외 거래 허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발전소사업 에너지자원의 세부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통합발전소사업 에너지자원 세부 범위 규정 (안 제1조의4)
- ②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연계방식, 재생에너지의 허용범위 등 개정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안 제7조의4, 제19조)

- ③ 전기공급 거부 및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에 법 개정으로 전기신사업에 포함된 통합발전소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추가 (안 제5조의5, [별표 1])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전화: 044-203-3916, 팩스: 044-203-4758)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2.08.
~03.19.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과 통합발전소사업 등 2개 유형의 전기신사업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사용할 시 전력시장 외 거래 허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등 개정법을 위임사항 구체화 (안 제3조의3)
- ② 한전·전력거래소·사업자 간 시간대별 전력량 정보제공, 전기신사업 신청 등 원활한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사항 규정 (안 제17조의5, 제17조의6,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전화: 044-203-3916, 팩스: 044-203-4758)

금융위원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4.02.05.
~03.0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개선 및 신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변경신고 대신 사전보고, 사후보고로 완화 또는 신고대상 제외 근거 마련 (안 제10조의11제3항 신설)
 -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심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대신 사전보고, 사후보고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마련
- ② 대표자·임원 변경시 변경신고 수리 이후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 의무화 (안 제10조의11제4항 신설)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임원이 변경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변경된 대표자·임원이 변경신고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의무화 규정 신설

③ 실명계정 발급 관련 의무 (안 제10조의12 및 제10조의18)

-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계정 발급시, 인력 확보, 시설 구축 등이 충분한 역량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 및 실명계정 개시·유지시 충분한 주의 의무 및 관련 법률 준수 의무를 규정한 조항 신설

④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안 제10조의12)

- 신고심사 관련 사실확인 지연시 등의 경우 신고심사 중단 및 이후 재개여부 확인에 관한 조항 신설

⑤ 직권말소 사유 추가 (안 제10조의13)

- 가상자산 관련 법 위반, 부적합 임원 직무수행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와](tel:02-736-1748) (전화: 02-736-1748, 팩스: 02-736-1756)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갑석의원 등 21인)

2024-02-07 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이제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다극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메가시티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이 없어 이를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인접한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인접한 1개 이상의 시·도와 1개 이상의 시·군·구가 형성한 초광역권의 전체를 합친 행정구역을 메가시티로 정의함 (안 제2조)
- ② 메가시티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메가시티지원위원회를 둠 (안 제8조부터 제21조까지)
- ③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약 또는 규약으로 메가시티를 설립하고 메가시티 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메가시티 도시계획 및 건설과 관련한 메가시티 사무 등을 메가시티단체장의 소관업무로 함 (안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메가시티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메가시티단체장은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련한 국가재정 지원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함 (안 제32조부터 제62조까지)
- ⑤ 메가시티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메가시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함 (안 제63조부터 제73조까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2024-02-06 발의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함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1주 간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의 계산에 있어, 1주 간의 합계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계도 연장근로시간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여 왔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연장근로에 1주 간의 한도만 두고 있을 뿐이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쉬지 않고 하루 21.5시간의 노동을 시키는 ‘몰아치기 밤샘노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어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임

이에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 53조, 제54조 등)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2024-02-07 발의

현행법 제25조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재개발사업 중 토지 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진하거나, 구청장 등 기타 사업자들과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도시의 경우 재개발사업 대상이 되는 토지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조합형식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바, 재개발사업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업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사유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토지등소유자 요건을 2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제1항제2호)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등 11인)

2024-02-08 발의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공동주택 입구 및 지하·지상주차장 입구를 자동차로 고정시켜 공동주택 주민들의 통행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함

2018년 송도, 2019년 화순, 2021년 평택에서 일방 통행로 입구를 자동차로 가로막은 사건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공동주택 입구 4곳을 9시간 동안 자동차로 막아 4,000세대의 입주민들의 차량이 출입하지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동주택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었음

수년 동안 특정 개인 및 집단이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공동주택 입구 및 주차장 등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즉각 행정으로 인해 현행법이 사문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공동주택 및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 자동차를 고정시켰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1시간 이내에 조치하여 주민들의 일상과 기본권을 지키고자 함 (안 제26조)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2/15(목) 10:00	-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 인사청문회

※ 제413회(임시회) 의사일정 (11일간)

일 자	주요 내용	비 고
2/19(월)	개회식	
2/20(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2/21(수)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국민의힘
2/22(목)	대정부질문 (비경제)	
2/23(금)	대정부질문 (경제)	
2/24(토) ~2/28(수)	상임위 활동	법률안 등 안건심사
2/29(금)	본회의	안건 심의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2/13(화) 14:00	저출생 극복, 건강한 자연출산과 행복한 양육문화 만들기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2/14(수) 14:00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강민정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2/15(목) 14:00	2024 한-아세안 포럼 제67차 국제심포지움 - 한국의 이민정책과 대 아세안 협력의 중요성	이명수 의원실, 한아세안포럼	의원회관 2소회의실
자료집 등	2/14(수) 10:00	2024년 건설업 주요 이슈 및 전망 관련 전문가 간담회 - 2024년 건설업 경기 현황 및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의정관 417호
	2/15(목)	「예산춘추」 통권 제73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2/5(월) 10:30	인천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토론회 - 지역방송 활성화와 KBS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배준영·김교홍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2/6(화) 14:00	건전한 투자시장 방ian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 - 신종증권·가상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김희곤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자료집 등	2/5(월)	「금주의 서평」 제665호 발간 - 도서명 : 온라인 세계의 극단주의 - 저 자 : 애덤 클라인	국회도서관	
	2/7(수)	「World&Law」 제2024-3호 발간 - 건강한 100세 시대, 생활체육이 필요하다고?		
	2/5(월)	「NABO Focus」 제70호 발간 - COP28 논의 동향과 온실가스 감축 경로 점검	국회예산정책처	
	2/5(월)	「Futures Brief」 24-01호 발간 - 공간컴퓨팅(Spatial Computing) 혁명의 파급효과와 의미	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2.05.~02.12.)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2/5(월)	환경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동향 및 개발사업에의 시사점 검토
2/5(월)	보험	사업시행자가 건설공사보험금으로 280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금액의 98% 기각시킨 사례
2/6(화)	에너지·자원	CCUS법 제정 및 공포
2/7(수)	기업인수/합병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동향
2/8(목)	방송통신(TM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관련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백운일 | 전문위원

[이메일주소](#)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